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 가.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찬성자 11명)
- 나. 의안번호 : 제 294 호
- 다. 발의일자 : 2018. 12. 21.
- 라. 회부일자 : 2019. 12. 28.

## 2. 제안이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신설하고, 수당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쉬운 용어로 순환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제명)
- 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함.  
(제1조, 제2조제1항)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함. (제6조의2 신설)
- 라.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을 규정함. (제6조의2 신설)
- 마. 수당등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제8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2017년 10월 24일 개정(2018.10.25. 시행)됨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 골자별 의견

#### 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 안 제7조)

- 먼저 제명 변경과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수정하려는 것임.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전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 개정 이후에는 행정계획에 따른 재해유발 대책 마련은 ‘재해영향성검토’로,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유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재해영향평가’라고 정의<sup>1)</sup>하고 있어, 본 개정안과 같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라고 할 경우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2)을 살펴보면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재해영향평가등”으로 약어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개정에 따라 수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재해영향심의위원회’라는 포괄 명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표 1] 수정안 조문대비표(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해영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u>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u>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재해영향심의위원회</u>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생략
  1. ~ 3. 생략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2)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조 (구성) ①서울특별시 <u>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제2조 (구성) ①————— <u>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u> ————— ————— ————— —————.	제2조 (구성) ①서울특별시 <u>재해영향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	--

- 다음으로 안 제3조, 안 제7조 역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동법 제4조제1항3)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 타당하다 판단되나 ‘재해영향평가등’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약어인 점을 감안할 때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2] 수정안 조문대비표(안 제3조, 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 (기능) 위원회는 <u>사전재해영향성검토</u>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 <u>재해영향평가등 협의</u> ————— ————— ————— —————.	제3조 (기능) ————— <u>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u> ————— ————— —————.
제7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u>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u> 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현지조사) ————— <u>재해영향평가등 협의요청서</u> ————— ————— ————— ————— —————.	제7조 (현지조사) ————— <u>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요청서</u> ————— ————— ————— —————.

3)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나. 용어 정비(안 제2조제2항, 안 제4조제1항, 안 제6조)

- 안 제2조제2항, 안 제4조제1항, 안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8판, 2017.12월)<sup>4)</sup>에 근거하여 조례 내용 중 ‘의한’ 및 ‘통할한다’를 각각 ‘따른’, ‘총괄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음.

[표 3]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2조제2항, 안 제4조, 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구성) ②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u>의한</u>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② <u>따른</u>
제4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장으로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u>통할한다</u> .	제4조 (위원장) ① <u>총괄한다</u>
제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u>의한</u>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회의) <u>따른</u>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수당등 지급 근거 신설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안 제8조)

- 안 제6조의2와 안 제6조의3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대한 투명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4) 법제처, <http://www.moleg.go.kr/lawinfo/easylaw/data?pstSeq=84347>

[표 4]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전"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li> <li>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li> <li>3.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li> <li>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li> </ol>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u>&lt;신 설&gt;</u></p>	<p>제6조의3 (위원의 지명 철회 및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현 행	개 정 안
	<u>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 <u>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규정<sup>5)</sup>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 본 조례안의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sup>6)</sup>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필요한 협의를 위해 구성되는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3. (생략)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6)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앞서 제명 등에 대해 검토했던 바와 같이 제6조의2의 내용 중 위원회 명칭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해영향심의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인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표 5]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u>대하여는 예산</u> 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수당 등) <del>대하여는 서울특별</del> <u>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u> 에서 정하는 바 <u>에 따라 예산</u> ----- -----